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. 10. 5 선고 2021가단115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
담당변호사 이원창

피 고 주식회사 A
변 론 종 결 2022. 9. 28.
판 결 선 고 2022. 10. 5.

주 문

1.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8. 5. 체결된
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
2021. 8. 5. 접수 제67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

1) 원고는 주식회사 B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고 한다)와, ① 2013. 3. 6. 한도금액 500,000,000원, 한도거래기간 2013. 3. 6.부터 2015. 3. 5.까지(이후 한도거래기간은 2022. 6. 24.까지로 변경되었다)로 정한 신용보증약정(이하 ‘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’이라 한다)을, ② 2020. 5. 28. 신용보증원금 255,000,000원, 신용보증기간 2020. 5. 28.부터 2021. 5. 21.까지(이후 신용보증기간은 2022. 5. 20.까지로 변경되었다)로 정한 신용보증약정(이하 ‘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’이라 한다)을, ③ 2020. 6. 24. 신용보증원금 152,000,000원, 신용보증기간 2020. 6. 24.부터 2021. 6. 23.까지(이후 신용보증기간은 2022. 6. 23.까지로 변경되었다)로 정한 신용보증약정(이하 ‘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’이라 한다)을 각 체결하고, 소외 회사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.

2)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, 원고는 소외 회사가 C 주식회사(이하 ‘C은행’이라 한다)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위 신용보증원금 및 종속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, 소외 회사는 장차 원고가 C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손해금,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,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, 이전, 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, ③ 미납한 보증료, 연체보증료, 추가보증료, ④ 채권의 집행보전,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
3)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C은행에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375,000,000원, 300,000,000원, 190,000,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, 소외 회사는 2021. 11. 4.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C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, 원고는 2021. 12. 17. C은행에게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93,641,520원, 이 사건

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56,215,755원, 이 사건 제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52,659,638원 등
합계 702,516,9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나. 피고와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

피고는 2021. 8. 5. 소외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
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소외 회사는
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
군위등기소 2021. 8. 5. 접수 제6700호로 채권최고액 1,000,000,000원, 채무자 소외 회사,
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다.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

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, 가액 합계 482,825,460원 상당의 이 사건 각
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,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3,593,051,913원
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,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
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이 법원의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,
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감정축탁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
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
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
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
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).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는 이 사건 제1 내지 3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해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,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, 실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1. 11. 4. 소외 회사가 C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, 이미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실제 원고가 2021. 12. 17. 이 사건 제1 내지 3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,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1)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).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모래 및 자갈 등의 골재를 납품하여 2021. 7. 31.까지 합계 900,894,05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,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기범

[별지]

1. 경북 군위군 F 공장용지 2,446㎡

2. 경북 군위군 F G동, H동, I동호

[도로명주소] 경북 군위군 J

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공장

1층 132㎡

2층 129.44㎡

3. 경북 군위군 K 공장용지 940㎡

4. 경북 군위군 K L동

경량철골조 및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 360㎡

5. 경북 군위군 M 입야 38,360㎡ 중 주식회사 B의 지분451/17,589. 끝.

